

『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9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9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9월 20일

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기획국장 김 용 학

나. 제안이유
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, 적용범위, 용어의 정의 등(안 제1조~제3조)
- 구미시농공단지심의위원회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10조)
-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입주자격, 분양가격 결정, 분양계약, 처분제한,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사항(안 제11조~제2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불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, 도시계획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대 운

○ 본 「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」은

- 기 제정 시행중인 농공단지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농공단지 ‘분양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,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농공단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입주자격, 분양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, 조례가 시행되면 적정한 분양가격 등이 결정되어 기업유치가 활발해지고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